

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신설 2022. 12. 20.>

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·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(제2조의17 관련)

1.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

- 가.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은 경우
- 나. 교통현황조사 결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
- 다.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
- 라.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확인하고도 적정하게 확인한 것으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

2.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

- 가.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(이하 이 호에서 “교통영향평가지침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의 내용 항목을 누락한 경우
- 나.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보고서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다. 고시 또는 공고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부지와 관련 있는 교통계획, 개발계획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검토·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